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기 관 의 장
선 람	



포항시보

제1090호 2016. 4. 19(화)

◀ 입법예고 ▶

- 포항 구룡포과매기 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제2016-25호) 2
- 포항시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제2016-26호) 12

◀ 고 시 ▶

- 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제2016-36호) 18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포항시도시건설사업소 제2016-4호) 26

회 람								
--------	--	--	--	--	--	--	--	--

입법예고

포항시 공고 제2016 - 25호

「포항 구룡포과메기 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4월 12일
포 항 시 장

포항 구룡포과메기 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과메기의 영양학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역사성·우수성 등을 홍보하기 위한 포항 구룡포과메기 문화관이 건립됨에 따라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운영시설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나. 관람금지 및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 다. 변상조치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라. 포항 구룡포과메기 문화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자문위원회 구성(안 제10조~제17조)
- 마. 포항 구룡포과메기 문화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8조~제24조)

3.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4. 조례안 : 붙임**5. 입법예고 : 2016. 4. 12. ~ 2016. 5. 3.(22일간)****6. 의견제출**

「포항 구룡포과매기 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수산진흥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 라.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포항시청 수산진흥과(포항시 남구 대감동 시청로 1)
 - 전화 054)270-2857, fax 054)270-2740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 구룡포과메기 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 구룡포과메기 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의 지역특산품인 과메기의 영양학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역사성·우수성 등을 널리 알려 계승·발전시키고자 건립한 포항 구룡포과메기 문화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포항 구룡포과메기 문화관(이하 “문화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문화관의 위치는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용주로7번길 30 일원에 둔다.

제3조(운영시설 및 기능) 문화관의 운영시설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전시시설 : 과메기 전시, 어촌문화체험, 해양체험, 영상체험, 관광 명소 및 먹거리 소개 등
2. 판매시설 : 카페, 기념품 및 지역특산물 판매 등
3. 연구시설 : 과메기의 영양학적 가치 연구 및 식품 안전성 관리 등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문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
3. 그 밖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관을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 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관람시간 등) ① 문화관의 관람시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시설 : 09:00부터 18:00까지

2. 판매시설 : 09:00부터 18:00까지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 입장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문화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전시시설의 일부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정신질환자 및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만 6세 미만의 어린이

4.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문화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2. 문화관 시설물 등에 손상을 주는 행위

3.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관리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행위의 금지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 제9조(변상조치 및 손해배상)** ① 관람자 및 수탁자가 문화관의 시설물과 판매시설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② 관람자가 전시품 등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시장과 협의를 통하여 지체 없이 변상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문화관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포항 구룡포과메기 문화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문화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2. 문화관의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문화관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문화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화관 운영과 관련하여 자문이 가능한 전문인사 및 관계 공무원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관 운영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의 경우 그 해당 보직 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관 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1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간 필요한 질병이나 해외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의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문화관을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문화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포항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설을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수탁 받은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기간)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재위탁, 재계약에 관하여는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문화관 관리자로서 수탁사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등 수탁재산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위·수탁협약) 제18조에 따른 시설 운영의 위·수탁은 시장과 수탁자 상호간에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22조(위·수탁계약의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수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수탁자가 위·수탁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문화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문화관의 관리·운영과 사업수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문화관의 관리·운영 상황을 수탁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5조(사업계획 및 결산) ① 문화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② 문화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문화관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포항 구룡포과메기 문화관 관리·운영 수탁신청서				처리기간 30일
법인(단체)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법인소재지)			
재산의 표시				
사용료		귀시가 정하는 바에 의함.		
사용기간		계약일부터 3년		
사용목적				

「포항 구룡포과메기 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과메기 문화관 관리·운영을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붙임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운영관리) 계획서 1부. 2. 등록단체인 경우 등록증 사본 1부	수수료 법인등기부 등본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포항시 공고 제2016-26호

「포항시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 4. 15.

포 항 시 장

포항시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상공회의소 『2015년 전국규제지도』 평가결과 B등급으로 나타난 항목 중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납부시기를 조정하여 규제를 개선하여 시민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 법령 개정 : 「도로법」 제76조 ⇒ 「도로법」 제91조(안 제1조, 제3조)
- 나.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납부시기를 조정
 -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 “원인자부담금은 공사 착수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3. 관련법령

- 「도로법」

4. 조례안 : 붙임

5. 예고기간 : 2016. 4. 15 ~ 2016. 5. 5(21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 : 건설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라. 참고사항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790-722)

포항시청 건설과(전화 270-3453, FAX 270-3420)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의 손해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법 제2조에 규정한”을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도로 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을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로, “손해자부담금”을 “손해자부담금(이하 “손해자부담금”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도로 복구공사”를 “도로복구공사”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시장”을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도로 복구공사”를 “도로복구공사”로, “때에는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를 “때에는 법 제91조에 따라”로, “원인자 부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공사시”를 “공사 시”로, “의하여”를 “따라”로, “단가는”을 “단가를”로 한다.

제3조제4항에서 “선납하여야”를 “공사 착수 전까지 납부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도로 손해자부담금”을 “손해자부담금”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원인 행위”를 “원인행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의”를 “단서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복구외”를 “복구 외”로, “원인자로 하여금”을 “원인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 및 도로의손케자부담금(이하 "손케자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로"라 함은 법 제2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 등 일체를 말한다. 2. ~ 4. (생략) 5. "부담금"이라 함은 도로 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 손케자부담금을 말한다. 6. "원인자"라 함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 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 및 도로를 손케한 사업 또는 행위를 한 자(이하 "손케자"라 한다)를 말한다. <p>제3조(도로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① 시장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도로를 굴착하거나 도로를 손케하여 도로 복구공사가 필요하게</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의 손케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 2. ~ 4. (현행과 같음) 5. -----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 -- 손케자부담금(이하 "손케자부담금"이라 한다)-----. 6. ----- ----- ----- 도로복구공사 ----- -----. <p>제3조(도로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 ----- 도로복구공사-----</p>

될 때에는 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복구공사의 시행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간접손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
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굴착
표준 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
준은 별표 1, 직접손해부분의 복구공
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 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의
하여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원인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

⑤ 원인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마칠 때까지 제3항에 의거 결정된 복구비 상당 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도로 손궤자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⑦ (생략)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① 이미 납부된 부담금은 환부하지

때에는 법 제91조에 따라 -----

원인자부담금 ----- . -----

② (현행과 같음)

④ _____ 공사 차수 전까지 납
부하여야 _____. _____
_____.

⑤ 따라

⑥ 손궤자부담금-----
-----.

⑦ (현행과 같음)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① _____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1. 원인자가 원인행위 착수 이전에 그 원인 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2. 3. (생략)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의 환부절차에 관하여는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제5조(복구공사의 이행) ① 도로 굴착지 복구 및 시설물손재복구는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소규모 굴착지 복구외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인자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의거 원인자가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행한다.

----. ----- 각 호의 어느 하나-----

-----.

1. -----
-- 원인 행위-----

2. 3. (현행과 같음)

② ----- 단서에 따른 -----

-----.

제5조(복구공사의 이행) ① -----

----. -----
--- 복구 외 -----
----- 원인자에게 -----
-----.

② ----- 따라 -----

-----.

고 시

포항시 고시 제2016 - 36호

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포항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4. 11.

포 항 시 장

1. 사업시행지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옥성리 31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 명 칭 : 중로1류180호선(초곡지구 진입도로)
 3.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경상북도 경산시 경산로 44길 7
 - 성 명 :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4. 사업계획 내용
 - 도로개설 : L = 315m, B = 20~27m, A = 당초 17,477㎡ → 변경 13,980㎡
 - 사업기간
 - 당 초 : 2015.4.30 ~ 2016.12.31.
 - 변 경 : 2015.4.30 ~ 2017.6.30.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자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6.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관계 편입토지조사, 도면등은 포항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054-270-34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 지번)	지목	면적		토지 소유자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북구 홍해읍 초곡리	998	천	118,837	311	농림축산 식품부					
2	북구 홍해읍 초곡리	998-10 (998)	천	850	850	농림축산 식품부					
3	북구 홍행읍 초곡리	998-11 (998)	천	3,724	348	농림축산 식품부					
4	북구 홍해읍 초곡리	998-2 (998)	답	871	11	기획 재정부					
5	북구 홍해읍 옥성리	300-1	답	1,247	133	탁상수	포항시 북구 홍해읍 마산리 109				
6	북구 홍해읍 옥성리	300-4 (300-1)	답	647	647	탁상수	포항시 북구 홍해읍 마산리 109				
7	북구 홍해읍 옥성리	300-5 (300-1)	답	125	125	탁상수	포항시 북구 홍해읍 마산리 109				
8	북구 홍해읍 옥성리	300-2	임	393	54	탁상수	포항시 북구 홍해읍 마산리 109				
9	북구 홍해읍 옥성리	301-3	답	4,272	1,154	탁상수	포항시 북구 홍해읍 마산리 109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 지번)	지목	면적		토지 소유자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0	북구 홍해읍 옥성리	301-8 (301-3)	답	704	704	탁상수	포항시 북구 홍해읍 마산리 109				
11	북구 홍해읍 옥성리	301-4	임	577	158	탁상수	포항시 북구 홍해읍 마산리 109				
12	북구 홍해읍 옥성리	301-9 (301-4)	임	201	201	탁상수	포항시 북구 홍해읍 마산리 109				
13	북구 홍해읍 옥성리	301-10 (301-4)	임	35	22	탁상수	포항시 북구 홍해읍 마산리 109				
14	북구 홍해읍 옥성리	310	답	2,088	213	박재석	서울시 강동구 문정동 1문정아파 트29동 205호				
15	북구 홍해읍 옥성리	310-1 (310)	답	5	5	박재석	서울시 강동구 문정동 1문정아파 트29동 205호				
16	북구 홍해읍 옥성리	312-1	답	2,086	453	박재길	울산시 중구 천하동 641 일산아파트 15동 602호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 지번)	지목	면적		토지 소유자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7	북구 흥해읍 옥성리	312-4 (312-1)	답	722	722	박재길	울산시 중구 천하동 641 일산아파트 15동 602호				
18	북구 흥해읍 옥성리	312-5 (312-1)	답	203	186	박재길	울산시 중구 천하동 641 일산아파트 15동 602호				
19	북구 흥해읍 옥성리	312-6 (312-1)	답	113	111	박재길	울산시 중구 천하동 641 일산아파트 15동 602호				
20	북구 흥해읍 옥성리	312-2	답	922	53	박재석	서울시 강동구 문정동 1문정아파 트29동 205호				
21	북구 흥해읍 옥성리	312-7 (312-2)	답	241	241	박재석	서울시 강동구 문정동 1문정아파 트29동 205호				
22	북구 흥해읍 옥성리	312-8 (312-2)	답	364	143	박재석	서울시 강동구 문정동 1문정아파 트29동 205호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 지번)	지목	면적		토지 소유자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또 는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3	북구 흥해읍 옥성리	313	답	1,879	685	이성우	포항시 남구 해도동 2 농협 은행 주식 회사	농협 은행 주식 회사	서울시 중구 통일로 120	근저당	
24	북구 흥해읍 옥성리	313-1 (313)	답	954	954	이성우	포항시 남구 해도동 2 농협 은행 주식 회사	농협 은행 주식 회사	서울시 중구 통일로 120	근저당	
25	북구 흥해읍 옥성리	313-2 (313)	답	1,018	141	이성우	포항시 남구 해도동 2 농협 은행 주식 회사	농협 은행 주식 회사	서울시 중구 통일로 120	근저당	
26	북구 흥해읍 옥성리	317-1	임	227	37	채석관	흥해읍 마산동 209				
27	북구 흥해읍 옥성리	317-4 (317-1)	임	77	77	채석관	흥해읍 마산동 209				
28	북구 흥해읍 옥성리	317-5 (317-1)	임	7	7	채석관	흥해읍 마산동 209				
29	북구 흥해읍 옥성리	317-2	답	258	77	김형식	흥해읍 마산리 142-3				
30	북구 흥해읍 옥성리	317-3	답	277	252	김형식	흥해읍 마산리 142-3				
31	북구 흥해읍 옥성리	317-6 (317-3)	답	438	438	김형식	흥해읍 마산리 142-3				
32	북구 흥해읍 옥성리	317-7 (317-3)	답	154	89	김형식	흥해읍 마산리 142-3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 지번)	지목	면적		토지 소유자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33	북구 홍해읍 옥성리	318-2	답	404	177	이상모	홍해읍 옥성동 251-9				
34	북구 홍해읍 옥성리	318-4 (318-2)	답	238	238	이상모	홍해읍 옥성동 251-9				
35	북구 홍해읍 옥성리	318-5 (318-2)	답	46	37	이상모	홍해읍 옥성동 251-9				
36	북구 홍해읍 옥성리	318-3	답	223	123	이상모	홍해읍 옥성동 251-9				
37	북구 홍해읍 옥성리	318-6 (318-3)	답	177	177	이상모	홍해읍 옥성동 251-9				
38	북구 홍해읍 옥성리	318-7 (318-3)	답	142	59	이상모	홍해읍 옥성동 251-9				
39	북구 홍해읍 옥성리	335	답	142	137	탁해석	북구 양덕동 양덕2차 이편한세 상 204-180 4				
40	북구 홍해읍 옥성리	335-1 (335)	답	251	251	탁해석	북구 양덕동 양덕2차 이편한세 상 204-180 4				
41	북구 홍해읍 옥성리	335-2 (335)	답	40	40	탁해석	북구 양덕동 양덕2차 이편한세 상 204-180 4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 지번)	지목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비 고
				공부상 면 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42	북구 흥해읍 옥성리	336	답	102	10	탁해석	북구 양덕동 양덕2차 이편한세 상 204-1804				
43	북구 흥해읍 옥성리	337	답	3,003	208	탁해석	북구 양덕동 양덕2차 이편한세 상 204-1804	홍해 새마 을금 고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내리 35-6	근저당	
44	북구 흥해읍 옥성리	337-1 (337)	답	399	399	탁해석	북구 양덕동 양덕2차 이편한세 상 204-1804	홍해 새마 을금 고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내리 35-6	근저당	
45	북구 흥해읍 옥성리	337-2 (337)	답	195	181	탁해석	북구 양덕동 양덕2차 이편한세 상 204-1804	홍해 새마 을금 고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내리 35-6	근저당	
46	북구 흥해읍 옥성리	350-1	유	49,709	90	농림축 산식품 부					
47	북구 흥해읍 옥성리	395	구	676	118	농림축 산식품 부					
48	북구 흥해읍 옥성리	395-1 (395)	구	50	50	농림축 산식품 부					
49	북구 흥해읍 옥성리	395-2 (395)	구	56	56	농림축 산식품 부					
50	북구 흥해읍 옥성리	395-3 (395)	구	300	57	농림축 산식품 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 지번)	지목	면적		토지 소유자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51	북구 홍해읍 옥성리	395-4 (395)	구	842	42	농림축 산식품 부					
52	북구 홍해읍 옥성리	396	도	1,081	26	농림축 산식품 부					
53	북구 홍해읍 옥성리	398	천	16,608	442	국토 교통부					
54	북구 홍해읍 옥성리	398-2 (398)	천	651	651	국토 교통부					
55	북구 홍해읍 옥성리	398-3 (398)	천	11,280	788	국토 교통부					
56	북구 홍해읍 옥성리	334	답	4,248	21	손중태	포항시 북구 송라면 광천리 726-12				
합 계				235,379	13,980						

포항시 도시건설사업소 고시 제2016 - 4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

포항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4. 12

포항시장

사업명	위치	사업내용	시행기간	사업시행자
도시계획도로 소2-8 개설	포항시 남구 동해면 신정리 282-6번지 일원	도로 개설 (L=32m, B=8m)	실시계획인가고시 ~ 2017. 12.31	포항시장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 소로2류8호선(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① 토지조서

일련 번호	토지 소재지		지 목	지 적 (m ²)	편 입 면 적 (m ²)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리	지 번				주 소	성 명	성명	주소	권리관계	
계		9 필		664	304						
1	동해면 신정리	282-6	답	37	37	대구광역시 두류공원로 5길 6-29	최*이	최*순 대*은행		근저당	
2	동해면 신정리	282-7	답	89	89	경기도 화성시 역골동로 70	방*규				
3	동해면 신정리	282-8	답	115	115	경기도 화성시 역골동로 70	방*규외 2	홍해 농*		근저당	
4	동해면 신정리	282-2	답	63	63	포항시 남구 대도동 160-24	김*성				

* 관계 토지조서, 도면 등은 포항시청 도로과 및 남구청 건설교통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상세한사항은 포항시청 도로과(☎054-270-34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